

『韓國아프리카學會誌』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韓國아프리카學會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인 『韓國아프리카學會誌』(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3회(6월 30일, 8월31일, 12월 31일)발간된다.

제 3조 (게재논문의 내용과 분야)

1. 제출되는 논문은 아프리카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아프리카학의 인접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제출되는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장르는 연구논문과 리뷰가 있다. 연구논문은 경험적 자료(현지 조사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이론적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의미한다. 리뷰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 및 서평을 포함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은 회장과 부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년도 하반기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 분야별 최종학위와의 일치 여부 및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과의 일치 여부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희망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단을 선정. 심사의뢰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독자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제 5조 (논문원고의 제출)

1. 게재신청 및 원고제출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정한 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마감일까지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다. 원고는 한글(97이상) 또는 MS word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투고일 및 심사일은 제 7조 학술지 간행 세부 일정을 따른다.

2.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 구분

공동 저작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3. 원고의 분량

원고는 참고문헌과 초록, 주제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한다. 규정된 원고매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영문 원고는 600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4. 초록 및 제목

한글원고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한글초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원고에도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원고에는 영문제목이, 영문원고에는 한글제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 외국에서 기고된 원고의 경우 한글초록과 한글제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요약문은 제목과 필자명을 포함하며,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초록의 경우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5. 주요개념어(key words) 지정

투고자는 원고 초록에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요개념어 5개 정도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6.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원고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8.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6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심사

원고접수를 마감한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이사는 제1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출된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서평을 포함한 리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맡는다. 제1차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2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대상 논문의 필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직 중인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과정의 익명성 보장

원고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위촉된 심사위원은 한국아프리카학회 세부 판정기준(6항 참조)에 맞춰 평가를 하고 심사결과서 및 수정 지시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심사기준은 논문의 독창성 30%, 완성도 40%, 기여도 30%로 한다.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15%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전체 평점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총 점수가 80점 이상은 무수정 게재(통과), 7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60점~69점은 수정 후 재심사(근분수정)이며, 60점 이하는 게재불가(탈락)이다.

6. 편집위원회의 판정

편집이사는 제1차 편집위원회가 끝난 후 1달 이내에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세부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결과 판정기준
통과	통과	게재
통과	부분수정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부분수정	

통과	근본수정	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근본수정	
통과	탈락	제3차 심사 후 수정 또는 불가 결정
부분수정	탈락	
근본수정	근본수정	게재 불가
근본수정	탈락	
탈락	탈락	

7. 판정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5의 결과에 따라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2) “제 3차 심사 후 수정 또는 불가 결정”, “수정 후 재심”을 받은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 위원회는 기존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8. 게재여부의 최종결정

편집이사는 제2차편집위원회가 끝난 후 3주 이내에 제3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차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 7조 학술지 간행 세부 일정(투고일, 심사일, 심사 완료일)

	1차 학술지 (6. 30)	2차 학술지 (8. 31)	3차 학술지 (12. 31)
투고마감	4. 30.	6. 30.	10. 30.
1차 심사소집	5. 4.	7. 4.	11. 4.
심사	5. 5.-5. 31.	7. 5.-7. 30.	11. 5.-11. 30.
2차 심사소집	6. 1.	8. 1.	12. 1.
수정의뢰	6. 2.-6. 15.	8. 2.-8. 15.	12. 2.-12. 15.
3차 심사소집(편집)	6. 16.-6. 25.	8. 16.-8. 25.	12. 16.-12. 25.
출판	6. 30.	8. 31.	12. 31.

韓國아프리카學會 연구윤리규정

韓國아프리카學會에서 발간하는 韓國아프리카學會誌는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금지

-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면,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

해야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8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아프리카학회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아프리카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에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아프리카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 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한국아프리카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작성요령

1. 연구논문은 본문, 참고문헌 초록과 함께 주제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자 원고지 120-150매 분량을 넘지 못한다. 영문원고는 6,000자 이내.
2. 원고는 표지, 영문 요약 각1부,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삽입한다. <영문요약>은 영문제목과 필자의 영문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1.1, 1.1.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1>” 또는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3. 본문작성
 - 1)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표기한다. 예: 종족주의(種族主義)
 - 2)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표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표기한다.
- 4) 외국지명 및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을 참고하여 가능한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표기한다.
- 5)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 6)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4. 출전표시

- 1) 출전은 본문 해당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 출판년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88)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는”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성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또는 “(Moore 1966)”, “(毛澤東 1962)”

- 3)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 띄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1979: 56)” 또는 “(홍길동 1994: 12)”
- 4) 저자는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외) 또는 “et al.”이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외) 1991: 35-38” 혹은 “Evans et al. 1992: 15-18”. 편저와 역저는 (편), (역) 등으로 표기한다.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괄호 안에서 쉼표로 나누어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0: 18, Cummings 1981: 72, Weiner 1967: 99)”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발행년/월일/ 일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년/월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02, 233)”

5.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 기타 언어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 3)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다.

홍길동. 1996. 『한국과 아프리카』. 서울: 개벽사.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丸山眞男(마루야마 마사오). 1964. 『現代政治論』. 東京: 未來社

林昱君(린위진). 1986. 『中國城市住宅供需研究』. 臺北: 中國經濟研究所

4)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5)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로마자로 쓰여진 경우는 이탤릭체(*The Coming of ...*)로,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문헌과 문헌 사이는 한 줄을 띄운다.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아프리카』. 서울: 민음사.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astin, J. and Winks, R. W. 1979. *Africa: Selected Historical Readings*. Nendeln: KTO Press.

신돌식(외). 1995. 『아프리카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모듬사.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Doc, J.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Europe.” Ph.D. diss., Singapore: Robin Hod University.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필리핀의 경험.” 김서방, 연놀부, 이어

- 도(편). 『아프리카의 국가와 시민사회』, 212-230쪽. 서울: 호박사.
- Schydlosky, D. M. and Wicht, J. J.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In McClintock, C. and A. F. Lowenthal (eds.) 1983. *The African Experiment Reconsidered*, pp. 94-123.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홍관중. 1995. "잠비아의 소수종족." 『아프리카의 종족분포』, 261-275쪽. 서울: 서울 프레스.
- 김철수. 1991. "20세기 초 나이지리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침투와 농민운동."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 75-88.
- 박사동. 1995. "우간다 신인민군의 운명." 『계간 사회비평』(봄): 101-122.
- Birch, A.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3): 325-344.
- 김돌쇠. 1993. "나이지리아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4월 8일), 5.
- Juoro, U.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April): 23.
- 6)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에는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 Cox, R.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In Modelski (ed.) 1979, pp. 414-429.
- Hymer, S. 1979.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In Modelski (ed.) 1979, pp. 386-403.
- Modelski, M.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6. 글자 모양 및 페이지 설정

- 1) 페이지 여백은 상하좌우 모두 2.8cm로 한다.
- 2) 글자 모양은 한컴바탕, 장평은 95, 자간은 -5, 본문 글자는 10pt, 각주 글자는 9pt, 대제목 크기는 15pt, 중제목 크기는 13pt, 소제목 크기는 10pt로 한다.
- 3) 문단 모양은 본문의 경우 왼쪽 . .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70%으로 하고, 인용문은 왼쪽 여백 2.5, 오른쪽 여백 2.5,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70%으로 하며, 각주는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0pt, 줄간격 130%으로 한다.

韓國아프리카學會誌

제 49집 2016. 12

2016년 12월 25일 인쇄

2016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겸
편집인 : 이진상

발행처 : 韓國아프리카學會

E-mail : africanstudykr@gmail.com

dlarleo@hanmail.net

인쇄 : 다해(전화 : 02-2266-9247)

內容의 無斷轉載.譯載를 금함

